



한국전기안전공사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관련 검사업무처리방법 알림

1. 제도개선부-173(2016.02.01)호 관련입니다.
2. 「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6호, 2016.1.29)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,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가. 정기검사 시 점검기록 서류 확인

- 1) 서류종류 : 고시 별지 제1호 ~ 별지 제8호 서식
- 2) 확인방법 : 고객이 비치하는 점검기록서류 현장확인 후 반납, 결과 기록
- 3) 시 행 일 : 2016. 2. 7 이후 정기검사 신청분부터 적용
- 4) 경과조치 : 2016. 7. 26.까지 시범·홍보기간, 2016. 7. 27부터 의무시행

나. 전기안전관리자 검사 입회 및 전기설비 운전·조작

- 1) 입회자 확인 :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미제출시 검사 입회자 서명 정보, 점검기록표의 점검자, 고객측 관계자 확인 받음
- 2) 주의 및 강조사항 : 전기안전관리자 신분확인을 빌미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기 바람
- 3) 검사 시 전기설비 운전·조작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도록 지도함

다.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이행 시 조치방법

- 1) 전기설비 점검기록 서류 제시의무 미이행, 전기안전관리자 미입회 및 운전·조작을 거부하는 경우는 “검사실시 확인서”에 기록하여 안내
- 2)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예비품을 준비하여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

라.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이행 시 전기사업법 벌칙조항 안내

- 1)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관련 : 100만 원 이하의 벌금(법 제106조)
- 2)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기록 관련 :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108조)

